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1. 제안이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547호, 2019. 8. 27. 제정 ·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밀원식물로 초본류, 수목류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품목을 지정하고, 지정한 것 이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함 (안 제2조)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서식과 그 첨부서류, 지정서 및 발급대장 서식을 마련함(안 제3조)

다. 농촌진흥청장은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꿀벌 유전자원 보존, 원종(原原種: 종자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 꿀벌 생산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급, 격리 품종개량장 설치 및 운영 등을 추진(안 제4조)

라.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록 절차 등을 정함(안 제5조)

(1) 꿀벌을 사육하는 자는 사육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양봉농가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검토하여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

○ 기준 미충족 시 :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 기준 충족 시 : 별표 2에 따라 고유번호 부여, 신청인에게 양봉농가

등록증 발급, 양봉농가 등록대장을 갖추어 작성·관리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을 별표 1로 정함

- 꿀벌 사육 규모(토종꿀벌 10군, 서양종꿀벌 30군, 토종과 서양종 함께 사육시 30군 이상), 꿀벌 사육 관련 시설, 장비, 안내표지판 등

마. 양봉농가의 등록내용변경 신고 절차 등을 정함(안 제6조)

(1)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양봉농가는 등록내용변경 신고서를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등록 기준 범위 내에서의 꿀벌 사육 군수 증감, 주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육장소만 이동하는 경우로 정하여 변경 신고를 생략하도록 함

(3)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서를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대장에 작성·관리하고, 양봉농가 등록증을 발급

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등록증,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등록대장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신고인에게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사. 기존 양봉농가의 등록 경과 조치 : 시행일(2020. 8. 28.) 이전부터 꿀벌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등록 신청

(부칙 제2조)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5. 8. ~ 6. 18.)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밀원식물의 범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밀원식물"이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초본류: 개양귀비, 꿀풀, 도라지, 들깨, 메밀, 엉겅퀴, 옥수수, 유채, 자운영, 질경이, 참깨, 토끼풀,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호박
2. 수목류: 동백나무, 두릅(민두릅), 때죽나무, 마가목, 매실나무, 모감주나무, 밤나무, 백합나무, 뽕나무(산뽕), 붉나무, 산딸나무, 산초나무, 쉬나무, 아까시나무, 오동나무, 옷나무, 음나무, 쥐뚝나무, 참죽나무, 층층나무, 칠엽수, 피나무, 헛개나무, 황벽나무, 황칠나무
3.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에 필요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물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3.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및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꿀벌 품종개량 보급 계획 수립·시행 등)** 법 제8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은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꿀벌 유전자원 보존
2. 원원종(原原種: 종자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 꿀벌 생산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급
3. 격리 품종개량장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양봉농가의 등록기준과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꿀벌을 사육하는 자는 사육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양봉농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꿀벌 사육장의 전경 사진
2. 해당 꿀벌 사육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3. 해당 꿀벌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제5항에 따른 별표 1의 기준 충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나 사진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제5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2. 제5항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 별표 2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양봉농가 등록증 발급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대장을 갖추어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양봉농가의 등록내용변경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양봉농가 등록 내용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5조제5항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꿀벌 사육 군수가 증감하는 경우

2. 주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육장소만 이동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내용변경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등록내용변경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대장 기록 관리 : 별지 제7호서식의 양봉농가 등록내용변경 신고대장에 기록 관리
2. 양봉농가 등록증 발급 : 별지 제5호서식의 양봉농가 등록증 발급

**제7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승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따른 법률」 제15조제1항 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의 경우

가.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양봉농가 등록대장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에 그 신고 내용을 각각 작성·관리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양봉농가의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부터 꿀벌을 사육하고 있는 양봉농가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표 1]

양봉농가 등록 기준(제5조제5항 관련)

1. 꿀벌의 종류

- 가. 토종꿀벌(학명 *Apis cerana* Feb.): 재래종 꿀벌로서 몸은 검은 색깔이며, 일벌(성충)의 몸길이는 9~11mm, 날개는 7.54±1.2mm의 형태적 특성을 지닌다.
- 나. 서양종 꿀벌(학명 *Apis mellifera* L.): 일벌(성충)은 황색 및 검은색이며 몸길이는 12~14mm, 날개는 9.32±0.16mm의 형태적 특성을 지닌다.

2.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 규모

- 가. 토종꿀벌은 10군 이상
- 나. 서양종 꿀벌은 30군 이상
- 다. 토종꿀벌 10군 미만을 사육하면서 서양종 꿀벌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서양종 꿀벌을 포함하여 30군 이상

3. 꿀벌 사육 관련 시설 등의 기준

| 항목                    | 기준                                                                                                                                                      |
|-----------------------|---------------------------------------------------------------------------------------------------------------------------------------------------------|
| 꿀 채취·보관·소분 관련 장비 및 시설 | ○ 벌꿀을 채취할 수 있는 장비와 양봉산물을 보관·가공하는데 있어 외부로부터의 오염원 유입이 차단되는 시설(양봉 전용 비닐하우스, 텐트 등 포함)을 갖추는 것(단, 꿀 채취와 양봉산물의 보관 및 소분의 위락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관련 장비와 시설은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 사육장 소독 시설 및 장비        | ○ 꿀벌의 병해충 방역을 위한 사육장 입구 소독시설이나 장비, 소독약품을 갖추는 것                                                                                                          |
| 사육장 안내 표지판            | ○ 일반인에게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나 안내표지를 설치 또는 게시할 것<br>○ 안내표지판이나 안내표지는 벌통의 설치장소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 또는 게시하되, 외부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 크기와 글씨를 사용할 것           |

[별표 2]

등록 고유번호 부여 방법(제5조제3항 관련)

제5조제3항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발급할 때 고유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하여야 한다.

1. 고유번호는 최초 발급 시·군·구명-꿀벌종류-일련번호 순으로 부여
2. 제1호의 꿀벌종류는 토종꿀벌만 사육하는 경우는 “토종꿀벌”, 서양종꿀벌만 사육하는 경우는 “서양종꿀벌”, 그 외 2개 종류의 꿀벌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는 “혼합”이라고 기재
3. 일련번호는 꿀벌종류별 등록증 발급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열람일 | 처리기간 | 30일 |
|------|-----|--------|------|-----|

|     |        |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      |
|--------|------|
| 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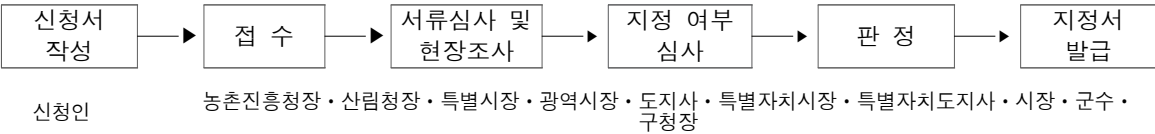
|               |                                   |           |
|---------------|-----------------------------------|-----------|
| 신청인<br>제출 서류  |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1부      | 수수료<br>없음 |
|               |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           |
|               | 3.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1부              |           |
|               |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           |
| 담당공무원<br>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4.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 산림청장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 특별  
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 지정번호 | 접수일자 | 기관명    | 전화번호 | 사무소 주소 |
|------|------|--------|------|--------|
|      | 발급일자 | 대표자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  
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신청인<br>(신고인)<br>첨부서류 | <p>&lt;신규 등록 신청 시&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꿀벌 사육장의 전경 사진 1부</li> <li>2. 해당 꿀벌 사육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1부</li> <li>3. 해당 꿀벌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4.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별표 1의 기준 충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나 사진 1부</li> </ol> <p>&lt;변경 신고 시&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li> <li>2. 기존에 발급된 등록증</li> </ol> | 수수료<br>없음 |
| 담당공무원<br>확인사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2. 주민등록표 초본</li> <li>3.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li> </ol>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제 호

## 양봉농가 등록증

고유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사업장(영업장) 명칭(상호):

주 사업장(영업장) 주소: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봉농가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뒤쪽)

[illegible]

양봉농가 등록대장

| 등록<br>연월일 | 등록번호 | 성명<br>(대표자) | 사업장(영업장)<br>명칭(상호) | 사육장(사업장) 주소       | 꿀벌 사육 군수 |     | 비고 |
|-----------|------|-------------|--------------------|-------------------|----------|-----|----|
|           | 고유번호 | 생년월일        | 주 사업장<br>(영업장) 주소  | 주 사육장(사업장)<br>주소  | 토종       | 서양종 |    |
|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보조 사육장(사업장)<br>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생년월일 기재를 생략함

## 양봉농가 등록내용변경 신고대장

[illegible]

주) 1.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생년월일 기재를 생략함

2. 꿀벌 사육군수가 등록기준에 미달 되어 변경신고를 한 경우는 양봉농가 등록농가수에서 제외 됨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아래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5일 |
| 승계를 하는 자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법인은 기재 생략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승계를 받는 자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법인은 기재 생략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사업장 (영업장) | 명칭 (상호)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           | 주소                      |                  |         |
| 승계사유      | [ ] 상속 [ ] 양도·양수 [ ] 합병 |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신고인 첨부서류   | 1. 기존에 발급된 등록증<br>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br>3. 양수의 경우<br>가.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br>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이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br>4.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br>2. 주민등록표 초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illegible]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